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
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해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16.

발의자 : 이해찬 · 전현희 · 민홍철

이원욱 · 조승래 · 강훈식

안호영 · 손혜원 · 진선미

제윤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 제14948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2019. 1. 25. 시행예정)에 따르면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(이하 “건설청장”)이 수행하던 건축허가 등 건축·주택 관련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게 됨.

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별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의 조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·개정, 건축허가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건설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건축조례의 제·개정 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,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·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세

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허가, 사용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).

**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
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**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의3 및 제6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의3(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)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행정 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.

②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·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60조의4(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)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, 승인, 검사 등(이하 이 조에서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
-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건설청 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허가등을 한 이후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60조의3(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)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에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.</p> <p>②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·경관 향상 및 도시 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/p>
<u><신 설></u>	<p>제60조의4(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)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</p>

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, 승인, 검사 등(이하 이 조에서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

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건설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허가등을 한 이후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